

광명시 법령질의 응답 및 관리 지침

제정 1991. 12. 11 예규 제11호
개정 1998. 10. 2 예규 제40호(조례규칙심사기준및처리지침)
2004. 9. 24 예규 제57호
2008. 6. 16 예규 제67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)
일부개정 2018. 7. 31 예규 제94호(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)

1. 목 적

이 지침은 법령질의 및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질의응답의 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질의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질의응답문서의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질의 및 응답체계 <개정 2018. 7. 31>

가. 모든 질의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한다.

(1) 사업소장 및 동장은 시장에게 질의한다.

(2) 시장은 도지사에게 질의한다.

※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의하는 법령해석만을 담당함.

나. 질의는 상급기관의 업무처리 주관부서로 한다.

다. 질의서를 경유문서로 작성하여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없다.

라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제사무담당부서로 할 수 있다.

(1)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

(2)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

(3)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

(4)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

마. 질의서는 반드시 일반문서로 시행한다.

※ FAX 또는 TTY 문서일 경우 첨부되는 관련서류의 글자가 불분명하여 검토 곤란함.

바. 질의할 때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.

※ 질의기관이 주장하는 견해를 “갑설”에 열거함.

사.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때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한다.

3. 질의 및 응답절차 <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08. 6. 16>

가. 질의서 또는 질의회신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.

(1) 시의 질의 심사공무원: 기획예산과

나. 질의서에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당 조항 사본, 지침, 지시문서의 사본 등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다.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문서의 심사대장에 심사 내역(심사번호, 심사일자, 소관부서, 주요내용, 수신처 등)을 기록하고 기안지 상단에 별표 3 서식(경기도 예규의 규정서식)의 고무인을 적색으로 날인한다.

라. 문서수발 부서에서는 심사공무원의 서명(싸인)과 별표 3 서식의 고무인 날인이 없는 질의서 및 질의회신문서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.

마. 질의자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“민원문서”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할 때도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4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서는 반려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가.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사례

나.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
다. 법규 또는 지침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 등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례

라. 질의내용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질의하는 사례

마. 순수한 법규의 해석이 아닌 사안을 법규해석인 것처럼 관련법규의 조항

- 을 열거하여 법제사무처리부서로 질의하는 사례
- 바. 문제에 대한 대책여부, 구체적인 방안제시 등을 구할 목적으로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질의하는 사례
- 사.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시해 주기를 요망하는 사례
- 아. 직근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질의하는 사례
- 자. 별표 1의 질의서식에 맞지 않도록 작성하여 질의하는 사례

5. 질의응답문의 관리 <개정 98. 10. 2, 2004. 9. 24>

- 가. 질의응답문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심사시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다.
- 나. 질의회신문을 접수한 소관 담당관·과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그 회신문을 복사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4의 “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”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라. 기획예산과에서는 질의회신문을 수집하여 “질의응답집”을 발간 배부한다.
- 마. 각 담당관·과에서는 질의응답문서를 일반문서와 구분 편철하여 준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2 예규 제4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4. 9. 24 예규 제5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예규의 개정) ① 광명시각종위원회관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호·제5호 및 제7호나목 중 “총무과”를 각각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광명시 법령질의 응답 및 관리 지침

제8호 중 “실”을 “담당관”으로, “총무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② 광명시소속직원성희롱예방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“총무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·제4조제1항 및 제3항·제6조제4항·제8조제2항·제9조제2항 및 제3항·제11조제3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감사담당관실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총무국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, “사회산업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사회여성복지과장”을 “가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③ 광명시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 중 “내무부 예규 제765호”를 “행정자치부예규 제58호”로 한다.

제3호 부서별란 중 징수과란을 삭제하고, “국별민원팀”을 “국·소 민원팀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예규 제67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예규 제94호, 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>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[별표 1] <개정 2004. 9. 24>

질의서 작성예시(기안)

(제목) ○○○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

(내용) ○○○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△△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현황(실태)

-
-

2. 질의요지

- 가.
- 나.

3. 해석상의 견해

- 가. 질의 “가”에 대하여
 - (1) 갑설 :
 - (2) 을설 :

4. 우리시(사업소, 동)의 의견

○○○한 사유로 “갑설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(기획예산과장 검토의견): (경기도에 질의할 때)

5. 참고자료 : 별첨(관련법규, 지침, 지시문서 사본 등). 끝.

[별표 2]

질의회신문 작성예시(기안)

(제목) ○○○ 질의에 대한 회신

(내용) 귀직(귀하)이 질의하신 ○○○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.

1. 관련문서번호 및 일자

2. 질의요지

가.
.....

나.
.....

3. 회신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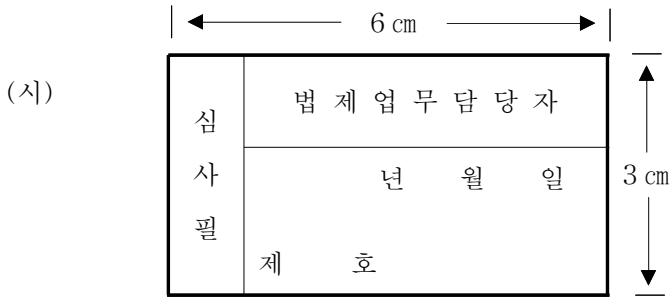
가. 질의 “가”에 대하여
○○○한 사유로 “갑설”이 타당함.

나. 질의 “나”에 대하여
○○○한 사유로 “을설”이 타당함.

4. 참고자료(해당있을 경우). 끝.

[별표 3]

주요문서 심사고무인 서식



[별표 4]

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(예시)

제 목 : 대도시의 공장이전의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

질의요지

○ 시화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로서 대도시지역 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시화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,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

- 질의기관(질의자): 광 명 시 장
- 문서번호 및 일자: 세무 22670-15715('89. 9. 27)

- 회시 내용

○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9조의6,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제외되므로 대도시의 공장(도시형업종제외)을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서 정한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대상이 되나

○ 「지방세법」 관계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별도 검토 확인하여야 할 것임.

- 회신기관: 경기도지사
- 문서번호 및 일자: 세무 22670-9435('89. 10. 25)